
2013년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

1. 평가대상

가. 대상기관

-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13년 7월 이전 개설하여 9월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2013. 3. 31. 기준 개설 기관수는 1,118개소 임

표 1. 지역별 개설기관 현황

(단위: 기관)

지역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관수	1,118	95	160	45	50	28	46	38	222	24	32	55	73	58	92	87	8	5
(%)	(100.0)	(8.5)	(14.3)	(4.0)	(4.5)	(2.5)	(4.1)	(3.4)	(19.9)	(2.1)	(2.9)	(4.9)	(6.5)	(5.2)	(8.2)	(7.8)	(0.7)	(0.4)

나. 대상 기간

- 2013년 7월 ~ 9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입원 진료분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개선 배경

- (보건복지부) 구조부문 지표 27개 중 웹 조사표를 활용하여 평가했던 기본시설, 환자안전, 의료장비 관련 지표 17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조사기준에 포함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현장조사를 삭제하며 의료·필요인력 지표 10개 및 진료부문(과정·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심평원에 요청

※ 관련근거: 의료기관정책과-6363('12.12.3.)호, 보험평가과-12981('12.12.11.), 2665 ('13.3.18.)호

나. 검토경과

- 2011.9.30: 요양병원 질지표 개발 및 가감지급 모형 개발 연구조정실에 의뢰
- 신규지표 12개 제언(2013년)
- 2013.1.22: 2012년도(4차) 요양병원 평가결과 관련 중앙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재원일수, 입·퇴원 여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길 바람(중평위 위원)
- 2013.3.14: 전문의학회 및 관련 단체에 적정성 평가 관련 의견 요청
- 대한노인병학회 및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 2013.3.27: 적정성 평가(지표 등) 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 2013.4.1: 적정성 평가기준(지표) 관련 내부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 2013.4.2: 전문가자문위원회 개최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안) 논의
- 2013.4.4: 관련단체에 의견 재요청 및 전문의학회에 의견요청
- 2013.4.10: 의견 재요청·요청에 대한 회신(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및 대한비노기과학회)
- 2013.4.11: 의견 제출내용에 대한 내부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다. 평가지표

◆ 구조부문(10개 지표)

항목	세부항목	지표명	비고
인 력	의료인력	○ 의사 1인당 환자수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 간호인력의 이직률	
	필요인력	○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 약사 재직일수율 ○ 방사선사(방사선 촬영 장비 포함) 재직일수율 ○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지표명 및 산출기준 보완 지표명 및 산출기준 보완

◆ 진료부문(14개 지표)

항목	세부항목	지표명	비고
진표	과 정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유치도노관이 있는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당뇨 환자 중 당화 혈색소(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매달 체중측정 환자분율	고위험군 대상, 저위험군 제외대상 보완 추가
	결 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욕창 개선 환자분율_고위험군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추가 추가 추가 보완(악화정의 명확화)

◆ 모니터링 부문(11개 지표)

지표명	비고
○폐렴 발생률	제외대상 보완
○패혈증 발생률	제외대상 보완
○폐렴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지표명 및 제외대상 보완
○패혈증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지표명 및 제외대상 보완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전문재활치료군)	
○진료비 고가도 지표	대상기간 보완
○장기입원 환자분율	추가
○7일 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추가
○5% 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추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율	추가
○요실금, 유치도노관 삽입환자 중 배뇨조절 프로그램 실시 환자분율	추가

3. 평가 방법

가. 조사내용 및 자료수집

구분	조 사 내 용	자 료 수 집
기 관 단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간호인력 구성,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등 - 의료인력 당 환자수 ※ 차등제 미신고 기관은 의사최저 등급의 환자수(60명)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부문(의료·필요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원: 요양기관 시설·장비 현황(변경) 및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자료 - 요양기관 시설·장비 현황(변경)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신고된 자료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자료는 3/4분기 인력현황
환 자 단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청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진자 현황, 환자분류군 구성 - 진료비 현황, 입원현황 ○ 환자의 임상적·기능적 상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기능상태, 배설기능, 피부상태, 통증 - 인지기능검사, 당뇨질환 관리 - 폐렴·패혈증 발생 현황 - 전문재활치료 실시 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과정 및 결과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체 요양병원의 2013년 7~9월 진료분 - 자료원: 진료비 청구 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 진료비 청구 명세서 및 환자평가표는 2013년 11월 심사결정 분까지 수집

나. 부문별 평가방법

- 구조부문 : 인력지표는 기관별 지표 값에 따라 절대평가
- 과정 및 결과부문: 요양병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의해 나타난 환자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표값의 분포 또는 성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 모니터링 부문: 종합지표 산출에서는 제외하고 요양병원에 feed back하여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값을 산출
- 종합지표 산출: 기관별 종합지표는 구조부문과 과정·결과부문의 각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 가중치 재검토 예정(현재 구조 5.4, 진료 4.6)

4. 평가 결과의 적용 및 활용

- 요양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 전체 및 동일 병상규모의 평균값과 평가등급을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구조 및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인력차등제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 제외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호(2012.12.2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04호(2010.8.31.)
- 대국민 홍보 및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 의료수요자에게 평가등급, 요양병원의 구조 및 질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
- 정부 및 관련단체나 유관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학회 차원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부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 | | |
|------------------------|-------------------------|
| ○ 2013년 4월 | 평가 세부 추진 계획 공지 |
| ○ 2013년 5월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 실시 |
| ○ 2014년 6월 | 평가결과 도출 |
| ○ 2014년 7월 | 5차 평가결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보고) |
| ○ 2014년 7월~9월 | 사전의견조회 실시(평가결과 환류대상 기관) |
| ○ 2014년 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 ○ 2014년 10월 ~ 2015년 3월 | 평가결과 환류(수가연계) |

< 향후 추진일정 >

구 분	2013년												201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가대상기간				■	■	■																		
5차 세부 평가계획 공지	■																							
4차 평가결과 및 5차 평가설명회		■																						
질 향상 지원 활동			■																					
평가자료 수집 및 구축								■	■	■	■													
평가자료 오류점검											■	■												
자료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												■	■	■										
전문가자문 및 자문회의												■	■											
중평위 심의															■									
사전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검토																■	■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						
5차 평가결과 수가연계																				■	■			

※ 세부 추진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평가지표별 세부 내용

1) 구조 부문(10개)

영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산 출 식	비고
의료 인력	의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의사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의사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수}}$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수}}$	
	간호인력의 이직률	○대상기간 동안의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병동 근무 간호인력 이직률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재직했던모든 간호인력수} \times 100}{\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수}} - 100$	
필요 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 물리치료실이 있으면서, 대상기 간 동안의 평균 물리치료사 1 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물리치료사수}}$	
	약사재직일수율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약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약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보완
	방사선사(방사선촬영 장비 포함)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동안 방사선촬영 장비 가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방사선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방사선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 방사선 촬영장비: c-arm 또는 골밀도 검사장비 만 있는 경우는 방사선 촬영장비가 없는 것으로 봄	보완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동안 임상 검사실이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임상 병리 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임상병리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사회복지사 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의무기록사 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의무기록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주 1. 대상기간: 2013년 7월 1일~2013년 9월 30일(단, 간호 인력의 이직률의 대상기간: 2013년 4월 1일~2013년 9월 30일)

2. 인력현황: 2013년 3/4분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현황 기준

2) 진료 부문(14개)

영역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과정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평가에서 MMSE 검사를 실시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 혼수상태이거나 섬망이 있으면서 '기관 절개관 관리'를 하는 경우 	$\frac{\text{입원 시 평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MMSE검사를 실시한 환자}}{\text{65세 이상 입원 환자}} \times 100$	보완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번실금 항목이 '조절 못함' 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3.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4. 사지마비, 하지마비, 척수손상인 경우 - 저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 - 저위험군 중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전원된 경우 증빙자료(요역동학검사 등으로 실시한 방광내압검사 결과지)를 통하여 다음에 해당함을 증빙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복적인 요폐로 인해 방광근의 기능이 소실된 acontractile neurogenic bladder (무수축성 신경인성방광), ② 항콜린제 등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방광 내압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 	$\frac{\text{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중 고위험군(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당뇨환자 중 HbA1c검사 실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검사를 실시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 평가가 입원 평가인 경우 	$\frac{\text{최근 1년 동안 HbA1c검사를 실시한 환자}}{\text{당뇨 환자}} \times 100$	
	매월 체중측정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환자평가 시 체중을 측정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수 및 와상 환자 	$\frac{\text{체중을 측정한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times 100$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치매환자군/ 치매환자제외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퇴: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증가한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2 이상 증가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월 평가에서 10가지 ADL의 값이 모두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이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frac{\text{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감퇴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치매가 아닌 환자)}} \times 100$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 중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지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일상 생활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이술이 '심하게 손상됨' 이면서, 단기 기억력이 '이상 있음'인 경우) 	$\frac{\text{해당월 평가에서 요실금이 있는 환자}}{\text{해당월 평가를 실시한 환자 중 고위험군을 제외한 환자}} \times 100$	

영역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결과		2. 이동관련 ADL- 체위변경하기(또는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가 모두 '전적인 도움' 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 제외대상 1. 해당 월 평가가 입원 평가인 경우 2.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3.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요루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 저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frac{\text{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 평가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 욕창의 악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창개수 가 늘어난 경우 2.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등급 이 심해진 경우	$\frac{\text{전월 평가에 비해 해당 월 평가에서 욕창이 악화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보완
	방밖으로 나오기 악화 환자분율 (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9.방밖으로 나오기」 항목이 감퇴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전월 평가에서 ADL 중 '9.방밖으로 나오기' 값이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안함' 이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우	$\frac{\text{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중 「9.방밖으로 나오기」 항목이 전월보다 감퇴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치매가 아닌 환자)}} \times 100$	추가
	욕창 개선 환자분율_고위험군	○ 전월에 비해 욕창이 개선된 환자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 욕창의 개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창개수 가 줄어든 경우 2.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등급 이 낮아진 경우 ○ 제외대상 1.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는 환자 2.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한 경우	$\frac{\text{전월 평가에 비해 해당 월 평가에서 욕창이 개선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추가

3) 모니터링 부문(11개)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폐렴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입원하고 있는 전체 환자 중 폐렴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기간 내 재발 시에는 포함) 	$\frac{\text{대상기간동안 폐렴이 발생한 건수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입원중인 전체 환자의 폐렴 치료기간을 제외한 입원일수의 합}} \times 1000$	보완
패혈증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입원하고 있는 전체 환자 중 패혈증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패혈증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기간 내 재발 시에는 포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패혈증이 발생한 건수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입원중인 전체 환자의 패혈증 치료기간을 제외한 입원일수의 합}} \times 1000$	보완
폐렴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폐렴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평균 폐렴 치료 일수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기간 내 재발 시에는 포함) 2. 폐렴 치료기간 중 전원·사망한 환자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폐렴 발생 환자별 폐렴 치료일수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폐렴이 발생한 환자수의 합}}$	보완
패혈증 환자 당 평균 치료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패혈증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평균 패혈증 치료일수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기간 동안 패혈증을 갖고 입원한 환자(동일 입원기간 내 재발 시에는 포함) 2. 패혈증 치료기간 중 전원·사망한 환자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패혈증 발생 환자별 패혈증 치료일수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패혈증이 발생한 환자수의 합}}$	보완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_전문재활치료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재활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군에서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감소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월 평가에서 ADL 10개 문항이 모두 '완전자립'인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frac{\text{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개선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전문재활 치료군 환자}} \times 100$ <p>▶ 전문재활치료군: 환자평가표 K2 “ 지난 7일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수”가 2 이상인 경우</p>	
장기입원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동안 입원환자 중 361일 이상 입원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병동 입원환자, 한방입원환자, 치과입원환자 	$\frac{\text{361일 이상 입원한 환자}}{\text{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한 환자}} \times 100$ <p>▶ 361이상 입원환자: 1당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코드 첫째자리가 “7” 로 청구된 환자</p>	추가
7일미만 입원환자 청구 건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 동안 입원환자 중 7일 미만 입원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병동 입원환자, 한방입원환자, 치과입원환자 	$\frac{\text{7일 미만 입원환자}}{\text{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한 환자}} \times 100$	추가
5%이상 체중감소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에 비해 체중이 5%이상 감소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수 및 와상 환자 - 비만환자(전월 체중이 73kg 이상인 경우) 	$\frac{\text{전월에 비해 5%이상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체중 결과가 있는 환자}} \times 100$ <p>▶ 5%이상 체중감소: (전월 평가 체중 - 해당 월 평가 체중) > 전월평가 체중 × 0.05</p>	추가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분율 - 중등도 이상의 통증: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중등도의 통증: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님 2. b.중등도의 통증: 매일 통증이 있음 3. c.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통증이 있으나 매일은 아님 4. c.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매일 통증이 있음 	$\frac{\text{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times 100$	추가
요실금, 유치도뇨관 삽입환자 중 배뇨 조절 프로그램 실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실금 및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중 배뇨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환자분율 - 요실금: 소변조절상태가 '자주실금', '조절못함'인 경우 - 배뇨조절 프로그램: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환자평가표 E.배설기능/3.환자에게 실시하는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기재 내역) 	$\frac{\text{배뇨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한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중 요실금이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times 100$	추가
진료비 고가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 진료비 대비 실제 입원진료비 	$\frac{\text{정액수가 실제진료비} + \text{행위별수가 실제진료비}}{\text{정액수가 예측진료비} + \text{행위별수가 예측진료비}}$	보완

주 . 대상기간: 2013년 7월 1일 ~ 2013년 9월 30일(단, 진료비 고가도 지표는 2013년 4월 1일 ~2013년 9월 30일)